

이석주 의원 (도시계획관리위원회, 자유한국당)

○ 질문내용

- 공원확보 기준상 문제점

- 공원녹지법 기준에 따라 5만㎡이상의 재건축은 세대당 2㎡를 확보하면 되는 데 세대당 3㎡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?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녹지확보면적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공원녹지법”) 제14조 제2항에서 주택재건축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녹지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㎡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녹지확보기준은 1세대당 2㎡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%이상 중 큰 면적이지만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일 경우 1세대당 3㎡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%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.
(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5만㎡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일지라도 단서조항에 따라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일 경우 제2항의 공원녹지면적 확보기준을 적용함)
-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되어 당시 일정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였더라도 준공된 택지개발구역내 재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시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의 개발계획 규모별 공원녹지면적 확보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(국토교통부 질의회신, 2016.10.13.) 끝.

작	기관명 (부서명)	직 위	성 명
성	서울특별시 (공원조성과)	담당사무관	권종화
자	☎ 2133-2076	담당자	최형순
작성일 : 2017. 12. 27.			